

므로써 본 위원회의 내실있는 활동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 출석시 일비 지급(안, 제2조)
- 인사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관련안건으로 공무여행시, 국내여비규정상 2급지방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지급(안, 제3조)

3. 제안근거

- 지방공무원법(1993. 12. 27 법률 제4613 호) 제7조 제4항
- 지방자치법(1991. 12. 31 법률 제4464 호) 제15조
- 인사 1106-350(1994. 2. 15.) 호: 자치 구조례준칙(안)

4. 조례(안): 별첨

5. 예산조치 필요성 여부: 예산조치 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비용 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4. 4. 12.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 3. 14.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 일자: 1994. 3. 16.
- 다. 상정 일자: 제2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94. 4. 12)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이 춘기)

가. 제안 이유

•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음.

나. 주요골자

-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협의회의 회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협의회의 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협의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내지 제10조)
- 협의회의 수당등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3. 전문위원의 겸임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전재)
 - 탈냉전 이후 세계무대에서의 무한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 각축이 자국의 국가 경쟁력 확보에 충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개혁과 개방못지 않게 국제화를 추구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음.

- 미래지향적인 행정활동을 효과적이고 일관성있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향하는 목표가 명백히 설정되어야 함.
- 동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우리구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적 대응방안등 국제화추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문(윤정용 위원) : 본 조례안에 대한 기본 계획, 운영 방안등은 있는가?
- 답변(이춘기 총무과장) : 향후 지방자치 단체의 활성화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현재까지 결정된 계획은 없고 앞으로 필요성이 대두될 때 이 협의회를 통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 질문(윤동현 위원) : 안 제9조에 보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정보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답변(이춘기 총무과장) : 조례가 미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구 관내 타 기관도 특별한 자유가 없는한 협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81
----------	-----

제출년월일 : 1994. 3. 14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음.

2. 주요골자

-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협의회의 회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협의회의 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협의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내지 제10조)
- 협의회의 수당등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1. 12. 31 법률 제4464호) 제15조
- 지방자치법시행령(1992. 9. 17 대통령령 제13727호) 제42조
- 국제 04000-192호('94. 3. 4) : 준칙(안) 시달공문

4. 제정(안) : 별첨

5. 예산조치필요성 : 협의회 수당등 예산조치 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소속하에 서울특별시마포구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협의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4명이하의 위원과 3명이하의 구의회 의원을 포함한 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법조·학계, 예·체육인증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종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회장 및 위원의 임기) ① 회장·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구에 재직중이 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회장이, 부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협의회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한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4. 4. 12.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 결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2. 25.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 일자 : 1994. 2. 26.

다. 상정 일자 : 제2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94. 4. 12)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가. 제출 이유

-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 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주요골자

- 자치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포함하여 11인이내에서 20이내로 함.(안, 제2조 제1항)
- 위원장은 필요한경우에는 3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안, 제6조 제2)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전재)

○ 등 개정 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확보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에 관계전문가 및 주민대표등을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등을 검토하게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보완하는 것임.

○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마련과 병행하여 공시지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부서조정 및 인력의 전문화등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문(김유현 위원) : 등 위원회의 인원을 늘릴 이유는 무엇인가?
- 답변(박재현 토지관리계장) : 예전에는 소위원회가 없었으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